[별지 제1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동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민간위원 위촉 시, 이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예규」에 따라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 처리되며, 위원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
|---|---|---|---|
|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
| 2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
| 3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예 ( ) | 아니오 ( ) |
| 4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과 관련된 용역, 계약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예 ( ) | 아니오 ( ) |
| 5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 6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 7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 ) | 아니오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며, 위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그 사유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